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것을 10년 동안 유예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자금지원,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, 그 유예기간이 지난날부터 계열회사로 편입돼 그간 중소기업으로서 받아오던 각종 혜택이 끊겨 연구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의 사업화 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와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10년 동안 제외하는 유예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집단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하도록 함(안 제5조 제2항 제4호)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6. 27. ~ 8. 11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규제심사 비
대상

대통령령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이고”를 삭제하고, 같은 호 나목의 후단을 “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인 회사”로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)	제5조(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)
① ~ ② (생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<u>회사설립</u> <u>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이고</u>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(동 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 을 포함한다)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가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 지주회사 및 자회사	4. ----- ----- <삭 제> ----- -----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
나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에 따른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<후단 신설>	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로서 <u>회사설립</u> <u>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인</u> <u>회사</u>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937